

의안 번호	253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b>심사보고서</b>
----------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2. 5.(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2. 5.(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8.(목)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 위탁사무 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재난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 안전점검 합격 처리 후 발생하는 제반사항(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
- 2026년 소요예산 : 없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건축사,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li> <li>○ 해당 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성 확보</li> </ul>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운영할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 채용이 필요하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li> </ul>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함</li> </ul>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인 실적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li> </ul>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 및 위탁·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li> </ul>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li> </ul>

다.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라.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10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0월 ~ 11월
- 지정기관 선정 : 10월 ~ 11월
- 지정협약 체결 : 12월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순정)

- 본 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202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에 전문성과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자격과 시설기준을 갖춘 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은 2025. 12. 31.자로 종료되므로 2026. 1. 1.자로 재위탁 하기 위해서는 2026. 1. 1.의 30일 전인 2025. 12. 1.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회에 동의안은 12. 5.일자로 제출되었음.
- 또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수탁기관 모집 및 접수, 심의, 선정 등으로 3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2025. 12. 1. 훨씬 이전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관 모집 및 접수, 심의, 지정기관 선정까지 완료되었고 12월에 수탁기관과 협약체결만 남겨둔 상황임.
- 이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안전점검 업무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